

## 대학원 학칙

제 15조 석사예약입학제에 의하여 입학한 자(대학재학 중, 조기졸업 및 대학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할 것을 허가 받고 제18 조 의 4 에 의거 학위과정 연계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)는 6 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
## 종합시험

제12 조 (시험과목)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 과목, 박사학위 과정은 3 과목으로 한다.

제13 조 (응시자격) 각 과정의 입학 후 2학기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14 조 (응시절차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9 조 에서 정하는 기간 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5 조 (시험위원) 학과 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 학위과정은 2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, 문항별 배점, 평가 기준 등 을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.

제16 조 (출제방법)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 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제17 조 (합격인정점수) 종합시험의 합격인정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17 조 의2 (시험의 면제)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한다. 또한, 석사학위과정은 1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2 편 이상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(SCI 혹은 SCIE급) 을 게재한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한다.

제 18조 (생략)

제 19조 (시험시기)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매학기 초 2주 이내에 시행한다.

제 20조 (시험결과보고) 학과(부)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.